

[]용기
[]냉동기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
[]특정설비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※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:)
	사업자등록번호	
	전자우편주소	
신청내용	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	
	재발급 사유(별첨 가능)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용기 []냉동기 []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첨부서류	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제조 등록증명서 (혈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)	수수료 1만5천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	→	접수	→	검토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산업통상부·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산업통상부·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산업통상부·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산업통상부·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산업통상부·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